

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3] <개정 2021. 6. 23.>

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(제28조제2항 및 제31조제2항 관련)

1. 자격요건

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이 경우 마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감독 하에서만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
- 가.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아목의 기계, 전기·전자, 토목, 건축 및 안전관리 분야의 특급 기술인
- 나.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실적이 있는 「건축사법」 제2조제1호의 건축사
- 다. 「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」 별표 2에 따른 특급 감리원 또는 별표 6 제1호에 따른 특급 기술자
- 라. 「철도안전법 시행령」 별표 5 제1호의 특급 철도안전전문기술자
- 마.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아목의 기계, 전기·전자, 토목, 건축 및 안전관리 분야의 고급·중급 또는 초급 기술인
- 바. 「건축사법」 제2조제1호의 건축사
- 사. 「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」 별표 2에 따른 고급·중급·초급 감리원 또는 별표 6 제1호에 따른 고급·중급 또는 초급 기술자
- 아. 「철도안전법 시행령」 별표 5 제1호의 고급·중급 또는 초급 철도안전전문기술자

2. 교육요건

	교육내용	교육시간
가. 정밀진단	1) 철도시설 일반 2) 정밀진단 방법 및 기술 3) 정밀진단 결과보고서 작성요령	1) 최초 교육은 70시간 2) 최초 교육을 받은 날부터 5년마다 14시간
나. 성능평가	1) 철도시설 안전성, 내구성 및 사용성 평가방법 2) 성능등급 산정 등 종합평가 방법 3) 성능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요령	1) 최초 교육은 14시간 2) 최초 교육을 받은 날부터 5년마다 7시간

비고

1.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교육과정은 구조물, 궤도, 건축, 전철전력, 신호제어 및 정보

통신분야로 구분한다.

2. 정밀진단을 실시하려는 자는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실시하는 정밀진단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, 성능평가를 실시하려는 자는 정밀진단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성능평가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.

가. 「철도산업발전기본법」 제13조의2에 따른 철도협회

나. 「철도안전법」 제69조제5항에 따른 안전전문기관

다. 「정보통신공사업법」 제38조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기관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협회

라. 그 밖에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

3.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